

ETC 시스템 이용 규정

(목적)

제1조 이 이용 규정은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한신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공사 등(유료 도로 자동 요금 수수 시스템을 이용하는 요금 징수 사무의 취급에 관한 성령(1999년 건설성령 제38호)(이하 '성령'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공고 또는 공시를 실시한 지방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혹은 시정촌)인 도로관리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성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지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준수 사항)

제2조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수속을 자동으로 하는 구조(이하 'ETC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ETC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 요금을 수수하는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한신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공사 등(이하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라고 합니다.)이 ETC 시스템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에 필요한 수속)

제3조 ETC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1호의 수속을 실시한 다음 제2호부터 제4호의 수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 (1)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 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ETC 카드(차재기(자동차(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착한 도로측 안테나와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교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삽입하여 차재기를 작동시키고 또한 통행 요금의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발행하는 자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 ETC 카드를 대여 받을 것.
- (2)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차재기 메이커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차재기를 구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할 것.
- (3) 전호에서 취득한 차재기를 차재기 메이커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에 장착할 것.
- (4) 성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일반재단법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2호에 의해 취득한 차재기를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할 것(이하 '셋업'이라고 합니다.). 단, 이륜차(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소형자동차 또는 경자동차인 이륜자동차(측차 장착 이륜자동차(걸터타는 방식의 좌석, 핸들 바 방식의 방향 조정 장치 및 3개의 차륜을 갖추고 또한 운전석의 좌우측이 개방된 자동차이며, 3륜 덮개형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셋업을 하기 전에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에게 등록할 것.

(차재기의 취급)

제4조 차재기의 분해, 개조 등, 기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2 차재기의 안테나 주변에 물건을 놓는 등, 전파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3 차재기를 취득한 자는 차재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번호판(자동차 등록 번호표 및 차량 번호표를 말합니다.)이 변경된 경우, 차재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견인 가능한 구조로 개조한 경우, 차재기를 다른 자동차로 옮겨 장착한 경우 등, 셋업되어 있는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셋업을 해야 합니다.

(ETC 카드의 취급)

제5조 ETC 카드의 분해, 개조 등,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2 ETC 카드를 대여 받은 자는 ETC 카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망실한 경우 및 대여된 ETC 카드가 파손, 변형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ETC 카드를 발행한 자에게 통지하여 주십시오.
- 3 유효 기한이 경과한 ETC 카드 및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 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ETC 카드를 발행하는 자가 무효로 한 ETC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방법)

제6조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카드를 차재기에 확실하게 삽입하고 ETC 시스템이 이용 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다음, ETC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하 'ETC 차선'이라고 합니다.)을 통행하여 주십시오.

(ETC 시스템의 이용 제한 등)

제7조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는 도로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예고 없이 ETC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상의 주의 사항)

제8조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차선(스마트 IC(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발의하여,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고속자동차국도법(1957년 법률 제79호)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결 허가를 받은 동법 제11조 제1호의 시설로,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956년 건설성령 제18호) 제13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규정된 ETC 전용 시설만이 설치되고, 동호 가에 규정된 ETC 통행차만이 통행 가능한 인터체인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선 및 일단 정지를 요하는 ETC 차선을 제외합니다.)을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차선 표시판(요금소의 차선상에 설치된 ETC 시스템의 이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안내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ETC' 혹은 'ETC 전용'(이러한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는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ETC/일반'(이러한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는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 및 일단 정차하여 직원에게 통행 요금을 지불하는 차량(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 운송 차량 가운데

데 경차량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이라고 표시되므로 이러한 표시를 통해 ETC 차선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20km/h 이하로 감속한 다음 진입할 것.

(2) ETC 차선 내는 서행하여 통행할 것.

(3)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차간 거리를 유지할 것. 특히 'ETC/일반' 이라고 표시된 차선에서는 앞차가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일단 정차하므로 주의할 것.

(4) 노측 표시기(차선의 좌우측에 설치되는 장치로, 통행 가능 여부 이외에 차종 구분, 통행 요금 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STOP 정차'를 표시하므로 이러한 표시를 확인할 것.

(5) 노측 표시기의 표시가 'STOP 정차'인 경우에는 ETC 차선상에 있는 개폐식 횡봉(이하 '개폐봉'이라고 합니다.)이 열리지 않거나 또는 닫히기 때문에 개폐봉 앞에서 정차한 다음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이러한 경우, 함부로 차 밖으로 나오거나, 전진 또는 후진을 하지 말 것.

(6) 노측 표시기의 표시가 '↑'인 경우에는 ETC 차선상에 있는 개폐봉이 열린 것을 확인한 다음, 개폐봉이나 기타 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통행할 것.

(7) 다른 차량과 병행하여 진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

2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스마트 IC의 차선 및 일단 정지를 요하는 ETC 차선을 통행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해당 차선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등에 따라 서행하여 진입하고, 지정된 정지 위치(이하 '정지 위치'라고 합니다.)에서 반드시 일단 정지할 것. 그리고 정지 위치에서 통신 개시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의 지시에 따를 것.

(2) 다른 자동차와 병행하여 진입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추월하지 말 것.

(3) 개폐봉이 열린 것을 확인한 다음, 개폐봉이나 다른 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통행할 것.

(4) 개폐봉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개폐봉 앞에서 정차한 다음 직원에게 신고할 것.

3 이륜차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차선을 통행할 경우에 전 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안내판이나 노면 표시 등을 통해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ETC 차선인지를 확인한 다음 진입할 것.

(2) 안내판이나 노면 표시 등에 통행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시에 따라 통행할 것.

(3) 갈지자 통행, 비스듬한 주행을 하지 말고, 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1대씩 똑바로 진입할 것.

4 이륜차(이 항에서만 측차 장착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차선 표시판에 'ETC' 혹은 'ETC 전용' 표시가 있는 차선을 통행할 경우, 개폐봉이 열리지 않거나 또는 닫힐 때에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후진하지 말고, 개폐봉 및 후속 차량 등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 개폐봉을 피해 ETC 차선에서 대피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경우,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지체 없이 해당 ETC 차선을 관리하는 ETC 취급 도로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5 직원이 차선을 횡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여 통행하여 주십시오.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통행 방법)

제9조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차선 표시판에 'ETC' 또는 'ETC 전용' 표시가 있는 ETC 차선, 스마트 IC의 차선 및 일단 정지를 요하는 ETC 차선에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잘못해서 이러한 차선에 진입한 경우에는 개폐봉 앞에서 정차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이러한 경우, 함부로 차 밖으로 나오거나, 전진 또는 후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통행 요금의 계산)

제10조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의 기록 장치에 기록된 통행 실적에 근거하여 통행 요금을 계산합니다.

(면책)

제11조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는 ETC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ETC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 이 이용 규정에 따르지 않아 입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규정)

제12조 이용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인 할인 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기타 ETC 시스템의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 이용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별도로 정합니다.

부 칙

1 이 이용 규정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

2 2008년 12월 1일부 ETC 시스템 이용 규정은 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폐지합니다(이하 생략).